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를 이사로 선임할 의무 부여〉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78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이사로 선임할 의무 부여(안 제52조제3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1. 19.

다. 회 부 일 : 2025. 1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임. 그런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등).

Ⅲ. 검토의견

1.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이사로 선임할 의무 부여(안 제52조제3항)

가. 개정안 요지

- 인터넷진흥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1명의 이사는 3년 이상 재직 중인 인터넷진흥원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야 함(안 제52조의제3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② (생략) <u><신설></u>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인터넷진흥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최소한 1명의 이사는 3년 이상 재직 중인 인터넷진흥원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u>

③ (생략) ④ 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생략) 2.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생략) ⑤ ~ ⑦ (생략) 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의2. (생략) 3.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4. 5. (생략) 제76조(과태료) ①·② (생략)	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 -----. 1. (현행과 같음) 2. 제4항----- ----- 3.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66조(비밀유지 등) ----- ----- ----- ----- ----- ----- -----.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제52조제4항제4호에----- ----- 4. 5. (현행과 같음)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2의4. (생략)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 25. (생략) ④ (생략)	같음) ③ ----- ----- -----. 1. ~ 12의4. (현행과 같음) 13. 제52조제7항을----- ----- ----- 14. ~ 2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검토사항

1. 본문 관련

- 노동이사제란 이사회에 노동자대표가 이사로 참여하여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서울특별시가 투자·출연기관 등에 근로자이사제 도입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9년에는 조례명도 「노동자이사제」로 정비되는 등 지자체 차원의 도입 및 확산이 진행된 바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에 일부개정되면서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도록 명문 규정이 마련됨¹⁾.

-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진흥원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 본 개정안은 기관 이사회 구성이라는 지배구조의 핵심 사항을 개별법 차원에서 재확인함으로써, 제도의 지속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법률의 개정의 실익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함.
- 진흥원은 현재 정관에 따라 노동이사제를 이미 도입·운영 중이며, 정관에는 노동이사에 관한 사항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²⁾, 노동이사제를 정보통신망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한국인터넷 진흥원 정관」

제4조(임원) ① 진흥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2. 이사 15인 이내(원장 1인,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인(이하 ‘노동이사’라 한다.), 원장을 제외한 2인 이내의 상임이사 포함)

않더라도 현행 제도 운영상 즉각적인 법적 공백이나 실질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진흥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안에 따른 개별법상 노동이사제의 근거 규정이 실익을 가질 것이나, 진흥원의 경우 직원 정원, 수입액, 자산규모 등 준정부기관 지정기준에 있어서 2026년 2월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음.

○ 둘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추후 개정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규율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본 개정안은 노동이사제를 새로 도입하려는 것이 아닌, 이미 운영되는 제도를 개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므로, 공공기관에 있어서 노동이사제의 일반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의 노동

제5조(임원의 선임) ③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연임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추천 또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가 임명권자에게 노동이사 연임 후보자를 추천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진흥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재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노동이사 연임 후보자를 임명권자에게 추천

⑥ 노동이사는 근로계약의 종료 등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노동이사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지위를 상실한다.

제9조의2(노동이사의 권한)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법」 등에 따른 비상임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제9조의3(노동이사의 의무와 책임)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법」 등에 따른 비상임이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이사 관련 규정과 일치시키는 것이 노동이사제 관련 정책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공공기관 관리 정책의 탄력성에 따라서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관련된 개별법과 일반법 사이 정합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의 검토가 요구됨.

-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에서 노동이사의 요건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연동시키는 것이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운영의 근거가 이미 정관을 통해 마련되어 있으나, 개별법 차원에서 재차 규정함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확보³⁾한다는 면에서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2. 부칙 관련

-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의 경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또는 법률의 시행이 긴급하거나 단순한 정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⁴⁾.
- 부칙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공포일 당시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노동이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개별법에 따라 지속 운영 가능

4)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822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없는 경우,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에 법 위반 상태가 즉시 발생할 수 있으며, 후속 선임 절차를 준비할 유예기간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 다만, 이미 진흥원이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 정관 개정을 통해 이미 노동이사를 선임한 상태이므로 개정안의 즉시 시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아 보이므로 단순한 정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포한 날 즉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을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진흥원은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 이미 정관 개정을 통해 2023년 3월부터 노동이사를 선임·운영 중이므로⁵⁾, 위 법이 즉시 시행되더라도 경과규정 부재로 인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228

5) 1대 박순태 노동이사('23.3.~'25.3.), 2대 황인표 노동이사('25.4.~현재)